

보 건 복 지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 소홀

기 관 명 동래구, 해운대구, 사상구, 기장군

내 용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30조, 제47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「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」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보장기관(시·군·구청장)은 보장시설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급여의 전부를 중지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시설생계급여는 월 급여 지급기준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, 이미 지급한 생계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하게 되어 있다.

그런데 동래구 등 4개 구·군에서는 ‘○○양로원’ 등 8개 보장시설수급자의 사망한 달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○○○ 등 13명의 시설생계급여를 과잉지급하였으며, 과잉지급 된 생계급여 1,140,103원을 확인일(2017. 02. 15.) 현재까지 평균 372일이 경과하도록 반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동래구청장, 해운대구청장, 사상구청장, 기장군수는

[주의]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